

부산직할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송학어린이집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괴정동 1075-2번지에 둔다.
2. 햇님어린이집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 534-13번지에 둔다.
3. 하단어린이집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하단동 608-14, 16번지에 둔다.
4. 감천송학어린이집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감천동 12-233번지에 둔다.

제 3 조(업 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반 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 4 조(취원순위) ①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 의료부조대상자 자녀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자녀
4. 맞벌이 가정의 자녀
5. 일반가정 자녀

② 전항의 취원순위는 사하구 보육위원회(이하 “보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근로자자녀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부산직할시장이 지정한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근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 취원시켜야 한다.

제 5 조(보육료) 보육료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개인 위탁운영 수탁자의 상한연령은 만 65세 이하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별지와 같이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기간) 위탁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약정의 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약정을 위반 했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수업자료

제3장 종사자 관리

문항

문항

문항

제11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기타 종사자는 원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전 보) 구청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 가) 종사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1. 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3일
• 6월이상 1년미만	7일
• 1년이상 2년미만	8일
• 2년이상 3년미만	11일
• 3년이상 4년미만	14일
• 4년이상 5년미만	17일
• 5년이상	20일

2. 병가는 질병,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 2개월 범위내로 하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가는 천재지변 공무 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에 필요기간을 허가한다.

4.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구 분	대 상	휴 가 일 수
결 혼	• 본인	7일
	• 자녀, 형제자매	1일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출 산	• 본인	60일 이내
	• 배우자(처)	1일

구 분	대 상	휴 가 일 수
사 망	• 배우자	7 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일
	• 자녀, 형제자매	3 일
	• 백숙부모	3 일
탈 상	• 배우자	2 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1 일
	• 형제자매	1 일

제14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원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직원-임면권자

제16조(징 계)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을 받은 종사원은 1년간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1. 견책사유

- 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 ②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이 하는 자
- ③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 조성자
- ④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자

2. 해임사유

- ①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자
- ②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 ③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자
- ④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
- ⑤ 시설의 재산, 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자
- ⑥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자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안

부산직할시 사하구 소유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사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라 하여(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위탁운영의 목적)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한다.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3. 재산표시 : 별첨과 같음

제 3 조(위탁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 4 조(위탁관리 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보육관계 법규 등과 “갑”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취원 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1억원 이상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6 조(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 7 조(계약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5.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 사하구 어린이집 운영조례 제16조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8 조(기 타) ①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199

위탁자 부산직할시사하구

위대표 사하구청장 (인)

수탁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